

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0. 1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중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전문부서로 축소하여 업무추진 전문성을 향상
- 추진배경 :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(2009. 9) 준용

2. 주요내용

-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전문부서장으로 축소 조정하여 업무추진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
 - 「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」 제5조3항 당연직 위원 중 “부군수, 기획감사실장”을 삭제
 - ⇒ 전문 부서장(평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) 중심으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업무추진 전문성을 향상하고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축소 하향 조정
- 평창군수 품질인증 상표(제2조 관련)에 “평창군농특산물브랜드”를 추가하여 평창군 농특산물에 대한 지역 이미지 부각
 - ⇒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, 평창군수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상에는 평창군에서 생산된 이미지의 표현이 취약하여 브랜드명을 추가함으로써 평창군 우수농산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함
 - 「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」 [별표 1]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처 협의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'09. 10. 01 ~ 10. 21 (20일간), 제출된 의견 없음
- 마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평창군 조례 제 호

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부군수, 기획감사실장”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평창군수품질인증상표(제2조 관련)

1. 인증상표



2. 작도법

나. 색상 : H - - - - -
A - - - - -
P - - - - -
P - - - - -
Y - - - - -
700 - - - - -
- 인증마크 - - - - -
- 인증마크 - - - - -
- - - - -
- 글자색 - - - - -
- 평창군농특산물브랜드 ~ C100%

관계법령 발췌

□ 『지방자치법』

제116조의 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□ 『지방자치법 시행령』

제80조 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·위원 등의 자문기관(이하 “자문기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
참고사항

□ 『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』 (2009. 9)

Ⅲ. 위원회 정비 방안

※ 위원회 설치 및 구성·운영 가이드라인 준수

- ▶ 기본방향 :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, 동 지침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위원회 남발 방지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

▶ 위원회 구성

- 전문적 지식·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임명·위촉하되 성별·지역·직능을 고려하여 균형을 유지
 - 공무원은 지나친 상위직급 책정을 지양하고, 민간위원 임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당연직을 제외하고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